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Q 당사는 수출바우처라는 정부과제를 진행중이며, 8월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신고 완료)
 거래처에서 발행 당시, 공급가액에 해외대리인 비용 및 관납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켰으나, 검토기관에서 이를 제외한 국내대리인 비용만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발급 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정발급 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고, 작성일자는 수정사유를 안 날로 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귀사의 의견대로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분할 관련

Q 물적분할 시 유형자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취득 미 완료상태인 건설중인 자산을 승계하고 신설법인에서 취득완료예정인 유형자산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계약금, 중도금이 지급된 건설중인 자산 승계
 2. 신설법인에서 잔금 지급 후 취득완료 예정
 1) 최초 계약서를 신설법인으로 재 작성해야되는지(계약금,중도금, 잔금)
 2) 아니면 지급될 잔금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해야되는지
 3) 아니면 신설법인에 관련된 승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따로 안해되 되는 건지

A 신설법인에 관련된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3안)되지만,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법률적 효력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초보자코너

수익사업 내에서의 비용처리 구분

- Q**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라(법인세법 113조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어 장부를 작성중이고, 수익사업의 대부분은 면세(도서공급)사업이었습니다. (사업①)
올해 초 과세사업 업종(숙박및 카페음식점업)을 개시함으로써(사업②), 회사코드를 추가 생성하여 수익사업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기장하였습니다. (더존프로그램 사용)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실지 귀속에 따라 새로운 사업(사업②) 관련 비용만을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②) 비용의 일부를 (사업①)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수익비용 대응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처리한 비용을 수익사업 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기존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문제없을지, 아니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을 해야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 A** 사업2의 비용을 사업1에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되며, 사업2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1과 사업2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만 안분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 Q**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해당직원이 회사에 중간정산신청을 요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회계 및 세무 위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A**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고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율만큼의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자를 받지 않거나 인정이자율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